

## 정관개정

# 협회정관 개정 초안 주요 요약내용

“협회 정관은 중앙회 및 지부가 준수해야 하는 협회의 모법(母法)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기본인 정관에 보완하면 회원의 불신해소와 항구적인 협회발전으로 전 회원에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77차 이사회 개정절차 통과 → 초안마련 → 제78차 이사회초안의결 → 홈페이지게재 의견수렴 → 결산이사회총회안확정 → 총회의결 → 정부승인발효〉

## I. 개정 취지

우리 정관은 2002년도 말 개정안을 2003년 1월 회원총회 의결을 거치어 농림부로부터 승인된 후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협회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항구적 정착과 협회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정확성을 높였고, 협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여 업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2002년 말 자산 38백만 원을 2007년 말 1,162백만 원으로 30배 늘리는 등 협회 기반이 확립되었고, 2002년 말에는 회원 600명이던 것이 현재에는 1,010명대로 회원 수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인 민주화, 투명화, 기구의 광역화 등 시대의 변화욕구 등에 따라가기에는 정관상 제도가 현실과 다소 미비하여 협회내의 갈등과 분쟁으로 친목을 저해하므로 정관상 미비

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중앙회 및 지부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외부 감사제도의 도입”, 정관에 규정된 임원진의 경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임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입증 보완” 및 그동안 변경된 명칭의 “자구 수정”을 통하여 협회운영의 투명화로 회원이 협회를 믿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화합단결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은 중앙회 및 지부가 준수해야 하는 협회의 모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계상 중앙회가 지부를 감사할 수는 없으나, 지부도 정관제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인 정관에 보완하면 회원의 불신해소와 항구적인 협회발전으로 전 회원에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 II. 협회 정관 검토 방향

### 1. 협회의 재정 안전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 전문외부감사제도 도입

○ 사유 : 현재 정관상 감사 두 분이 어려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왔으나, 중앙회와 지부에 대하여 일부 회원이 불신을 갖고 있어, 친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감사님의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회원이 의심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일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다 보니 협회를 떠나서 제3자적 위치에서 공신력 있는 판단을 전 회원에게 확인하면 회원이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 국가시험을 거친 세무, 회계사를 외부 감사로 두어 회원이 의결한 예산을 회계원칙에 맞게 지출되었느냐를 판단하여 회원 앞에서 보고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정부가 공익적 기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제도는 열어 놓고, 시행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총회 결의로 시행되도록 유보할까 합니다.

#### ○ 현재

- 내부감사 2인, 임기 2년 업무 및 회계를 분기별로 감사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계사(월 17 만원 지출)가 총회 회의 자료로 작성제

### 공, 협회에서 총회에 보고

#### ○ 개선

- 감사를 3인으로 늘리고 그 중 1인을 외부 전문 감사로 위촉(서울의 경우 비용 월 30만원 추가소요 예상)
- 외부감사는 세무회계자격증자로 위촉
- 내부감사는 회계를 포함한 업무전반을 총괄 담당
- 외부감사는 예산에 따른 집행을 전문적으로 분담
- 외부감사는 분기별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결산감사결과는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함(상근 시 비용부담이 어려움)

\* 다만, 비용문제를 감안하여 제도는 열어놓고 시행만 여건이 성립될 때까지 유보(제78차 이사회결정)

### 2.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사유 : 임원의 자격은 정관에 이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의 규정에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상위법에 의한 개인생활 보호 상 협회가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고, 중앙회나 지부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 현행

- 법률에 의한 선고를 결격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 보호로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

## ○ 개정

- 정관의 임원의 자격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결격이 아니라고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
- 회원으로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협회를 알 수 있는 2년이 경과해야 자격이 있도록 결격사유에 추가

## 3. 명칭변경으로 인한 자구 수정

- 현행 상무이사를 → 전무로
- 현행 농림부장관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 기타 조문 정리

### 정관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개정

## 임원선거시행세부규정 개정(안) 취지

우리 협회 정관이 개정된(안)을 시행하려면 내부규정도 정관에 따라야 하며, 개정되는 임원선거시행세부규정은 협회 내에 존재하는 규칙으로 2006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된 규칙과 기존 내규에 있는 규칙이 두 종류로 존재하여 이를 통합화하려는 것입니다.

내규라 함은 단체와 관련된 정관, 규정, 규약, 준칙, 등을 총칭하는 말이고, 타 기관의 경우 정관과 규정, 규약, 준칙, 및 관련법규를 모아 책으로 엮어 표제에 내규라 이르고 있습니다.

협회 정관은 제6조에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규정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사항의 규정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업무를 처리하는 근거로 이

용하기에 불편하여 총괄내규의 선거 부분을 뽑아 규정에 합본하고, 내규의 선거 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 시마다 규정을 개정하면 선거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간단하고 책임이 덜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기본적인 틀은 규정에 정하여 총회 의결을 받음으로서 명실상부한 규정으로 존속 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임원선거세부시행규정은 한 개가 존속하여 변경은 총회를 거치게 되어 신중을 기하게 하므로 선거제도의 통일성을 보장, 영속시킬 수 있고, 전 회원이 알고 있으므로 확실한 준수를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정관 개정초안 중요내용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초 안	개 정 사 유
<p>제11조(임원)</p> <p>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u>〈단서 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장 1인</li> <li>2. 부회장 2인</li> <li>3. <u>상무이사</u> 1인</li> <li>4. 이사 7인 이상 21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포함)</li> <li>5. 감사 2인</li> <li>6. <u>〈신설〉</u></li> </ol> <p>② 임원은 <u>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u> 비상근으로 한다.</p>	<p>제11조 (임원)</p> <p>① ..... 다만, 임원간, 임원과 집행간부(자부 포함)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u>전무</u>.....</li> <li>4. ....</li> <li>5. <u>내부감사</u> 2인</li> <li>6. 전문외부감사 1인을 둘 수 있다.</li> </ol> <p>②....<u>전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으로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분산하여 참여의식 고취와 회원의 광범위한 의사 반영</li> <li>- 명칭변경</li> <li>- 여간형성 시 감사 중 전문외부감사 1인을 증원(78차이사회 제도는 마련 시행은 유보)</li> <li>- 명칭변경</li> </ul>
<p>제12조 (임원의 선출)</p> <p>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 한다. 단, 회장, 부회장, <u>상무이사는</u> 비회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p>	<p>제12조 (임원의 선출)</p> <p>①.....</p> <p><u>전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변경</li> </ul>
<p>제18조 (임원의 자격)</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u>〈단서 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회비 등을 체납한 자</li> <li>5.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p><u>〈제6호 신설〉</u></p>	<p>제18조 (임원의 자격)</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li> <li>4. ....</li> <li>5. ....</li> </ol> <p>6. <u>회원으로서</u> 임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u>회원 가입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u>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서 확인 불가</li> <li>- 개인정보보호 : 개별로 스스로 입증해야 가능함 입증방법 규칙에 신설(제78차 이사회 검토 안)</li> <li>- 비상대책위원회 의견</li> </ul>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16조 (임원의 임기)</p> <p>① 회장, 부회장, 이사(상무이사 포함)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 및 <u>상무이사</u>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6조 (임원의 임기)</p> <p>① .....<u>전무</u>..... ..... <u>전무이사</u>..... .....</p> <p>“단,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 및 전무이사의 재임기간은 2기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변경</li> <li>-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 단서 “연임” 해석 분분 혼동 없는 “단,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 및 전무이사의 재임기간은 2기에 한 한다.”로 평생 두 번으로 분명하게 수정</li> <li>- 제78차 이사회 초안 작성 시 출마는 자유 책임은 2기로 해석 원점 환원됨</li> <li>- 헌법에 대통령은 1회 중임이고, 지방자치법에 시도지사는 재임기간을 3기로 하여 평생 대통 령은 한번만, 시도지사는 3번만 하도록 규정</li> <li>- 연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국가와 같이 분명이 없게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 재본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li> </ul>
<p>제30조(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총회 구성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일 경우에는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은 회원의 가족이나 사용인이 아니면 될 수 없다. ③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총회 참석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 개시 전까지 소집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은 그를 지명한 회 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p>	<p>제30조(총회의결권 행사)</p> <p>① ..... 의결권을 갖고 <u>본인이</u>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권 삭제 : 협회회원수가 1천명이 넘고 대리권자가 회원의 의사와 반반 선거행사로 부정의 소지가 많음</li> <li>- 본인이 직접 선거권 행사(비대위 안)</li> <li>- 대리 권한 삭제(비대위 안)</li> </ul>
<p>제7장 부칙</p> <p>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사단법인 허가받을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p> <p>3. (준용)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p> <p>4. 〈신설〉 (시행유보)</p>	<p>1. .... 2. .... 3. .... 4. (시행유보) 정관 제11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6항, 제41조 제3항의 조항은 정부가 사업을 위탁하여 인수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외부감사제도” 시행제도는 마련하고,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시행만 유보 - 제78차 이사회의 초안 작성 시 방향으로 결정됨.</li> <li>- 비대위에서 수정 재확인</li> </ul>